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314

발의연월일: 2021. 8. 30.

발 의 자:정일영·김수흥·소병철

안규백 • 윤준병 • 이동주

장철민 · 주철현 · 허종식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자 평균연령은 56.9세이고, 상장사의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7%이 르고 있음. 이처럼 국내 기업 경영진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 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가업 승계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 감 시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장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사례가 적어 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사후관리 규정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제한 의무, 가업종사 의무, 지분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위반 사유가 상속인 본인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까지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것은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촉진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승계받은 가업의 낙후되고 진부화한 기계설비 등을 자동화 방식의 설비로 대체하여 최소인력으로 가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경우, 장기적인 매출 감소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등 상속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을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여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 단서 신설, 안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받은 가업이 보유한 노후기계설비의 자동화설비로의 대체, 장기적 매출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6항제1호마목1)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받은 가업이 보유한 노후기계설비의 자동화설비로의 대체, 장기적 매출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미달이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 ⑤ (생	제18조(기초공제)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6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	
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	
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	
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	
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
다.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 1. -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 다. (생 략) 기
 -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
<u>경우.</u> <u>다만, 상속받</u>
은 가업이 보유한 노후기계
설비의 자동화설비로의 대
체, 장기적 매출감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미달이 발생한 경우
는 제외한다.

- 2) (생략)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 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 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 <단서 신설>

- 2) (생 략)
- 2. (생략)
- ⑦ ~ ① (생 략)

2) (현행과 같음)
마
<u>.</u>
1)
<u>경우.</u> <u>다만, 상속받은 가</u>
업이 보유한 노후기계설비
의 자동화설비로의 대체,
장기적 매출감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
여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⑦ ~ ① (현행과 같음)